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별지 제33호서식]

공증
인가 **범무법인 민주**

(전화) T.02-591-8868
(팩스) F.02-591-5841

등부 2019년 제 6942 호

인 증 서

발기인총회의사록

2019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1 명	발행주식총수	60,000주
출석발기인수	1 명	이의 주식수	60,000주

발기인 대표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민경배는 위와 같이 상법 소정의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회의 진행 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전원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14조의 3 및 정관 제30조에 따라 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자, 발기인 전원 법인이사1인과 **감독이사 2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감독이사 홍 한 선

감독이사 황 문 양

제3호 의안: 주금납입은행 및 장소결정의 건

의장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될 주식대금의 납입은행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음을 설명하고 이의 승인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납인은행 및 장소 :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점

제4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 사항의 조사 보고를 발기인 아닌 법인이사, 감독이사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자 전원 이의 없이 아래 임원을 검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감독이사 전원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조사에 착수하다.

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휴회한 후 속회하다.
검사인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폐회시각은 오전 11시)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19년 11월 25일

발기인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대표이사 민경배



조사보고서

2019년 11월 25일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총회에서 본인은 검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 2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사사항

1.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와 정확여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주 (액면주식 1주의 금액 금5,000원)로 그 인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수

보통주식 60,000주 2019년 11월 25일 인수완료

2. 인수 주식수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60,000주에 대하여 금300,000,000원의 납입금이
2019년 11월 25일 납입이 완료되었음은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점이 발행
한 주급납입증명에 의하여 명확함.

3. 현물출자 기타 조사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기타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상법제 290조 규정사항
을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정확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

4.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 다.

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

2019년 11월 25일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독이사 홍 한 선

감독이사 황 문 양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별지 제37호서식]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전화) T.02-591-8868
 (팩스) F.02-591-5841

등부 2019 년	제 6942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2019년 11월 25일자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주주겸 발기인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의 대리인 이철진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9년 11월 2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은하민	
	아	
1. 진술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위임장-----